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체 기간제 근로자(청사안내원) 수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883(2026.7.10.)호, 제2026-930(2026.7.22.)호, 제2026-960(2026.7.29.)호와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체 기간제 근로자(청사안내원) 수시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최종합격자

응시분야	응시구분	응시번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청사안내원)	안내	04. 05. 08. 15. 16

※ 근무시작일 등 근무 관련 사항은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rkatk1305@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 14일 이내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